

# 남을 대신한 보건의료 관련 의사결정

Making Healthcare Decisions for Other People

## 대리의사결정

환자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



## 누가 대리의사결정자(SDM)인가?

통상적으로 SDM은 가까운 친척입니다. 캐나다 보건의료 관계법에는 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순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인이 SDM이 되기를 원하지 않거나 될 수 없을 경우, 그 다음 순위의 사람이 SDM이 됩니다. 저희는 누가 SDM인지 판단하는 것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대리의사결정자 목록 (보건의료동의법 - Health Care Consent Act 1996)

1. 치료 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거부할 권한이 있는 보호자
2. 치료 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거부할 권한이 있는 보건관리 담당 변호사
3. 동의능력위원회(Consent & Capacity Board)가 임명한 대리인
4. 배우자 또는 사실혼자
5. 자녀, 부/모 또는 아동원조협회
6. 면접교섭권을 가진 부/모
7. 형제자매(모두 대등함)
8. 기타 친척(친척, 인척 또는 입양 관계)
9. 공공후견인 겸 신탁관리인(Public Guardian and Trustee)은 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거부할 능력이 있거나 그럴 의향이 있는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경우에만 택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 대리의사결정자(SDM)의 의사결정 방식은?

남을 대신하여 보건의료 관련 결정을 내리는 것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이 있습니다. 대리의사결정자(SDM)는 다음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 환자가 이전에 나타낸 소망, 또는
- SDM이 환자의 소망을 모를 경우, 환자의 최선의 이익
- SDM은 환자의 가치관과 믿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 SDM은 치료에 의해 환자의 상태 또는 건강이 호전될지, 더 악화되는 것이 방지될지, 또는 악화 속도가 완화될지에 관해 담당 보건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 SDM은 다음과 같이 자문해보십시오:

- “지금 환자가 스스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면 이 치료를 받겠다고 할까 거부할까?”
-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는 무엇이 중요할까?”

## **존엄사 유언 / 사전의료지시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존엄사 유언(Living Will) 또는 사전의료지시서(Advance Directive)는 SDM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환자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서에는 보건의료에 관한 특정인의 소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환자는 자신의 소망에 관해 SDM 및 가족과 상의하여 자신의 소망을 확실하게 밝혀야 합니다.

## **복수의 SDM의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

SDM이 2명 이상일 경우, 치료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UHN의 보건의료 전문가는 SDM이 이러한 의견 불일치를 해결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의견 불일치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공후견인 겸 신탁관리인이 결정합니다.

## **치료진과 SDM의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환자의 치료진이 볼 때, SDM의 결정이 환자의 소망이나 최선의 이익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치료진과 SDM의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 치료진 또는 SDM은 치료 결정이 적법하게 내려진 것인지 심사해줄 것을 동의능력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UHN은 우수한 환자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및 SDM이 자신의 권리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기에 환자가 기꺼이 응할 보건의료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 보건의료팀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정보는 다음 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적 면책: 본 팸플릿에 기재된 정보는 법률 조언이 아니며 변호사의 조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 연락처 정보 & 자원

### University Health Network 생명윤리부(Bioethics):

Toronto General Hospital                      전화: 416 340 4800 구내번호 8607

Princess Margaret Cancer Centre            전화: 416 340 4800 구내번호 2710

Toronto Western Hospital                    전화: 416 603 5800 구내번호 2521

Toronto Rehabilitation Institute            전화: 416 597 3422 구내번호 3972

**Patient Relations:**                              전화: 416 340 4907

### Consent & Capacity Board, Toronto Regional Office

토론토 지역사무소

전화: 416 924 4961, 팩스: 416 924 8873

[www.ccboard.on.ca](http://www.ccboard.on.ca)

### 공공후견인 겸 신탁관리인실(Office of the Public Guardian and Trustee)

전화: 1-800-518-7901

[www.attorneygeneral.jus.gov.on.ca/english/family/pgt/](http://www.attorneygeneral.jus.gov.on.ca/english/family/pgt/)

### Advance Care Planning

[www.advancecareplanning.ca](http://www.advancecareplanning.ca)

### 보건의료동의법(Health Care Consent Act 1996), 대리의사결정법(Substitute Decisions Act)

[www.e-laws.gov.on.ca](http://www.e-laws.gov.on.ca)



### Have feedback about this document?

Please fill out our survey. Use this link: [surveymonkey.com/r/uhn-pe](https://surveymonkey.com/r/uhn-pe)

Visit [www.uhnpatienteducation.ca](http://www.uhnpatienteducation.ca) for more health information. Contact [pfep@uhn.ca](mailto:pfep@uhn.ca) to request this brochure in a different format, such as large print or electronic formats.

© 2022 University Health Network. All rights reserved. Use this material for your information only. It does not replace advice from your doctor or other health care professional. Do not use this information for diagnosis or treatment. Ask your health care provider for advice about a specific medical condition. You may print 1 copy of this brochure for non-commercial and personal use only.